

준 비 서 면

사 건 2020누582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결정취소및재심의청구의소
원 고 전 민 정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재심의신청에 대한 거부 회신의 처분성에 대하여

가.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방송법 제100조 제7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제재조치 명령의 수범자 등에게 재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일반 시청자가 방송법 제100조 제1

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제재조치 등 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달리 원고에게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라고 판시하며, 이 사건 재심의 신청에 대한 거부 회신의 처분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원심 판단은 방송법상 제재 처분을 받는 직접당사자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직접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 기타 제3자의 경우에는 제재조치 등 의결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규상 신청권도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 민원처리법에 따른 회신 내지 응답은 최소한 절차적·형식적 권리로서의 법규상 신청권에 해당된다는 점

민원처리법은 일반민원, 고충민원으로 민원을 분류하면서, 행정기관의 장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접수된 민원을 일정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원처리법 제27조).

이와 같은 민원처리법상의 규정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7누7004 판결 등의 판시와 같이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

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의 절차적·형식적인 신청권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형식적인 신청권이 인정되는 한 이는 거부처분의 처분성 요건으로서 ‘법규상 신청권’에 해당됨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절차적·형식적인 신청권이 인정되는 한 ‘법규상 신청권’은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심의신청에 대한 거부 회신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처분성을 인정하여, 해당 거부 회신의 위법성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1) 방송법상 관련 규정

<p>방송법</p> <p>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u>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p>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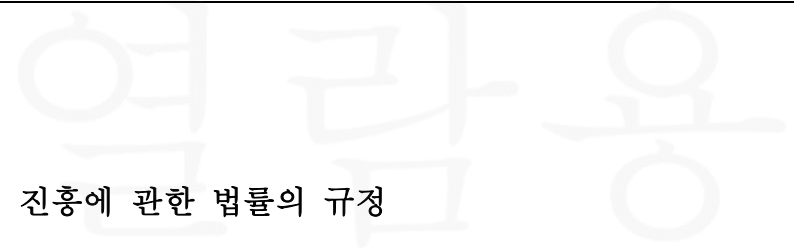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 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신문과는 달리 방송의 ‘공적 책임’ 과 ‘공정성 및 공익성’ 을 강조하는 방

송법

언론관련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체계는 크게 방송법과 신문법으로 나뉘는 바, 위 (1)과 (2)항에 의하면 방송법의 경우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문법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에 대한 접근권,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보장하여, 신문을 통한 기사 보도에 대한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압력 기타 부당한 조치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언론관련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대하여는 이념적·정치적 편향성, 이른바, ‘매체적 편향성’을 수궁하면서, 방송에 대하여는 매체적 편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법적 의무화시킨 배경에는 방송이 가지는 파급력과 매체로서의 전달성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방송법 제100조는 제재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방송법상 시청자 권익보호와 신문법상 독자 권리보호의 차이점

방송법 제3조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문법 제6조 제1항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시청자가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규정한 반면, 신문법은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 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방송에 관하여는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청자의 참여 및 의사 전달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원고와 같은 일반 시청자도 방송법 제100조 제7항에 따른 재심청구권이 인정되며,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 명령이 아닌 권고결정에도 재심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가) 원심은 “방송법 제100조 제7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제재조치 명령의 수범자 등에게 재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일반 시청자가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제재조치 등 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부정하였습니다.

(나) 방송법 제100조 제7항은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바, 원심의 법 해석과 달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제재조치 명령의 수범자에 한정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법 제100조 제7항은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 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주체에 한정되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방송법상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 담보의 관점에서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다) 제재조치 외의 권고결정에도 재심청구권을 인정토록 유추적용하는 것이 방송법 제3조의 취지상 타당한 점

어느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책임 내지 공정성 및 공익성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방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한 제재조치 명령을 취하지 않고, 권고결정 및 의견제시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회피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내지 공정성 및 공익성을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책임을 방기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권고결정 및 의견제시의 수범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에 대하여도 재심의요청권을 인정하여 권고결정 및 의견제시가 아닌 제재처분 명령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지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추가 부여하는 것이 방송법 제3조의 시청자의 권익보호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6) 소결

① 방송법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규정하고, 시청자의 참여 및 의사 전달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가 인격을 형성하는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가 자기통치의 실현수단이라고 간주하면서 민주제의 참된 모습이란 정치적 언론이 숨을 쉬는 공간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다수의사로 결집,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고(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의 확보와 언론매체에 의한 정보의 전달은 민주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 이른바 ‘신청권 이론’에 대한 존립에 관한 비판 및 판례변경을 통한 명시적 폐기의 필요성

(1) 거부처분의 처분성 요건으로서 신청권 법리

대법원은 거부처분이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른바 신청권 법리, 즉, 국민에게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청권의 존부는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적·추상적인 관점에서 판단될 뿐이며,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신청권 법리에 관한 비판론

다만 위와 같은 신청권 법리에 관하여는 ①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청권 법리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사법 불신을 초래한 점, ② 법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해석 또는 헌법상 기본권 법리까지 도출하며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확대하여 신청권 법리가 존립할 근거가 사라지고 있는 점 등이 제기되면서 신청권 법리에 관한 폐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이상덕;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권’ 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재심의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의 경우 원고가 재심의신청을 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논리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이 사건 재심의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시청자들의 구체적인 불이익(원고 적격 및 소의 이익에 관하여)에 관한 부분

원고가 2020. 11. 3.자로 제출한 항소이유서 제 6~11 면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은 일반 시청자로서 원고의 이익에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장학회의 진행 강좌가 휴업상태가 되고, 회원 탈퇴 등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거부회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의 방송법 기타 규정 위반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아 원고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인 업적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한 일을 업으로 하면서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대표하는 원고의 사회적 명예 및 지위라는 구체적인 법익에 크나큰 제한을 주었으므로, 원고 적격 및 소의 이익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 재심의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의 위법성

가. 관련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시청자 제작 영상물 방송) 전문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갑 방송이 시청자인 을 사단법인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프로그램을 수십 회에 걸쳐 방송한 사실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 각 방송이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이라 한다) 중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한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및 사자(死者) 명예존중에 관한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을 명한 사안에서, 위 각 방송은 시청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및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고,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므로, 방송내용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심사를 할 때는 무상으로 접근 가능한 지상파방송이나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또는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하면 위 각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아니하여 구 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각 방송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관련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진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사자 명예존중을 규정한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체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성·공정성·

균형성을 심사한다면, 방송법이 매체와 채널 및 방송분야를 구별하여 각 규율 내용을 달리하고, 각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 및 이로써 공정한 여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방송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심의할 때에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라고 판시함으로써 방송 매체, 채널,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 사안의 경우

(1)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심사에 있어 강화된 또는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에 따르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에 관한 심사는 방송 매체, 채널,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사한 대상 방송의 경우에는 시청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및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을 통해 방영된 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무상으로 접근 가능한 지상파방송이나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이 사건 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에 해당되기 때문에 완화된 심사기준이 아닌 ‘강화된 또는 엄격한 심사기준’ 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사실관계 및 방송 출연자들의 언행 기타 행동 등이 시청자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력, 사회적 논쟁 야기 및 갈등 발생 등을 면밀하게 심사, 확인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방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 에 해당된다는 점

(가) 관련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⑤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한국방송공사는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된 사안인 만큼 공정성·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의무가 있는 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이념적·역사적 관점에 따라 그 평가가 상반될 정도로 정치적·이념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평가가 매우 침해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며, 이 사건 방송 제작을 담당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방송단 김종석 팀장도 위와 같은 인식하에 이 사건 방송 제작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함에 있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정성·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출연자 및 방청객 선정, 방송의 진행방향 및 내용 구성에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였는지 의문인 점

(가) 이 사건 방송 제작 담당자들의 주장

- 박상수 위원
 - 질문 드릴게요. 출연자 김용옥 씨는 역사학자인가요? 철학자인가요?
- 김종석 KBS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방송단 팀장
 - 기본적으로는 철학자인데 원래 동양에서 철학이 역사랑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그분이 개인적인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근현대사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오고 계셨죠. 저술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 박상수 위원
 - 이분이 이 주제의 토론을 위해서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 김종석 KBS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방송단 팀장
 -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100주년에 대한 걸맞은 나름의 방송사적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것을 할 때 어떤 형식이 좋겠는가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대개 학자 분들은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잘 하지 않으시죠. 그냥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을 하시고 그래서 도올 선생은 본인도 저희 강연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는 이 사안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 표명을 해요. 그러면 그 생각과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유아인 씨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프로그램을 보면 방청객도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은 강연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았고 좀 진화된 형태의 토론 또는 콘서트 형태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 그 어느 누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룹에 있어 오히려 도올 선생 같은 분이 조금 더 이 틀에 맞는, 저희가 생각한 틀거리에 맞는 인물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림1](을제1호증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김종석 팀장은 이 사건 방송은 강연 프로그램이 아닌 진화된 형식의 토론 또는 콘서트 형태의 프로그램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김용옥이 의견을 표명하면 소외 유아인, 방청객이 다른 의견 내지

생각을 제시하는 등 토론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 박상수 위원
 -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평가가 있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 김종석 KBS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방송단 팀장
 - 그렇죠.
- 박상수 위원
 -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도올 이분 혼자만 출연시켜서 이분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이 역사적 평가를 들었다는 말이죠. 저는 조금 출연자를... 시각을 달리하는 출연자를 출연시켜서 조금 다각적으로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재국 KBS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방송단 단장
 -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애초에 이 프로그램 기획이 도올 김용옥 선생하고 유아인 둘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어떤 주제를 방청객과 함께 폭넓게 토론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이런 관점의 학자와 저런 관점의 학자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역사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학자 의견을 불일 수 있겠습니까만 이 프로그램은 애초에 기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림2](을제1호증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신재국 단장은 이 사건 방송은 소외 김용옥과 유아인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주제를 방청객과 함께 폭넓게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관점의 학자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 방송 제작 담당자들은 이 사건 방송은 소외 김용옥과 유아인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주제를 방청객과 토론하며, 상호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프로

그램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나) 이 사건 방송의 출연자 및 방청객 선정, 방송의 진행방향 및 내용 구성 등에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 “(김용옥)남한에도 마찬가지로 마침 미국서 활약하던 인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미국서 커넥션이 좋았어요. … 이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외국에서 살면서 세상을 잘 보니까, 바로 일본에 있는 맥아더한테 나아말로 우리 한국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인간입니다. 편지를 쓰니까 맥아더가 저쪽에서는 소련이 진주해가지고 서른세살 먹은 청년을 데려다가 완전히 인기를 획득하고 있고, 지금 남한의 문제가 좀 복잡해지니까 빨리 너 와봐,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미국과 소련이 여기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Puppet, 괴뢰예요 괴뢰. 어떤 의미에서 자기 말 가장 잘 듣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 방청객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아무리 미국의 등을 업고 왔어도, 그 당시 민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여쭙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의 힘으로 또다시 대통령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묘지에 안장돼서 편안히 있다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고 묻자,
- 이에 대해 “(유아인)좋은 대통령이건 나쁜 대통령이건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선 선생님(김용옥) 책에 쓰여 있는 문구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거룩한 사기꾼이라고, 거기에 대한 부가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3](을제1호증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소위 김용옥이 이승만 대통령을 ‘Puppet, 괴뢰’ 라고 언급한 뒤, 방청객은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적인 부분을 부

각시키며, 국립묘지 안장을 부정적으로 보며 소외 김용옥과 유아인의 의견을 묻고 있으며, 소외 유아인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소외 김용옥 저서에 쓰인 ‘거룩한 사기꾼’ 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가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방송 제작 담당자들은 이 사건 방송의 경우, 소외 김용옥이 의견을 표명하면 소외 유아인, 방청객이 다른 의견 내지 생각을 제시하는 등 토론이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 방송 출연자, 방청객의 대화 내용을 보면, 형식적·외형적으로만 토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며, 사실상 소외 김용옥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파하면, 소외 유아인, 방청객들은 이에 상당부분 동조하는 취지 내지 소외 김용옥의 생각을 물어보면서 소외 김용옥의 답변을 구하는 방향으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방송은 외형상으로만 소외 유아인과 방청객의 견해가 오갈 뿐, 소외 유아인과 방청객이 소외 김용옥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정적인 인식 및 판단에 대해 비판 내지 반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다 그 부정적인 인식 및 판단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동조하되 다른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만 취할 뿐입니다.

- “(유아인)정말 정상국가로서 나아가는 길목에서 처음 대통령이 된 사람인 것 같은데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파낸다는 게 저로서는 ... 참 슬픈일인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가졌던 수 많은 대통령들이 바람직한 모습만을 보여준 대통령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죠. 최초의 대통령, 최초의 권력자, 권력의 맛에 취해가면서 점점 타락하고 이상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좀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끝까지 파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나쁜 롤모델로 들 수도 있는거 같아요. 저렇게는 안된다, 권력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다, 우리 조심해야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그림4](소의 유아인은 소의 김용옥이 고수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하여는 기초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며, 다만 연민적인 감정에서 다른 방식을 취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의견만 제시할 뿐입니다.)

이 사건 방송 제작 담당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정 토론과 대화가 이뤄지는 형식의 방송을 추구하였다면, 소의 김용옥과는 대립되는 견해를 가지는 방청객 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역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상호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자체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 출연자들의 의견 교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방송의 출연자 및 방청객 선정, 방송의 진행 방향 및 내용 구성에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의 공정성·균형성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소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사실관계 및 방송 출연자들의 언행 기타 행동 등이 시청자에게 미칠 수 있는 과급력을 면밀하게 심사, 확인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고 방영할 의무가 있고, 개인이 제작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면밀하고 강화된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제작·방영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방송의 출연자 중 소외 김용옥의 경우, 이 사건 방송뿐만 아니라 타 방송 프로그램 및 기타 저술 활동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이념을 기조로 본인의 사상을 피력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발언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논란 내지 논쟁을 불러 일으킨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소외 김용옥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 사건 방송 전 저술한 서적 기타 강연에서도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 사건 방송에서도 그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 내지 발언들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 및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방송을 강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심사에 있어 강화된 또는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적정한 제재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불

구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 내지 다소 부적절한 언행만이 문제 또는 개인의 소신을 법적으로 제재할 필요는 없다는 소극적인 심사로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권고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불충분한 심사라는 점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권고 결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 를 주었으니, 그 자체로 이 사건 재심의에 대한 거부회신은 위법합니다.

4. 결어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그 동안 제출한 모든 서면 및 증거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이 사건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용

첨부서류

1. 참고자료 1. 이상덕;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권’ 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1. 참고자료 2.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2021. 5.

열람용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대표변호사 오 수 진

담당변호사 윤 승 환

서울고등법원 귀 중